

임산물 표준규격

제	정	2012.	4.	23.	고시	제2012-	28호
개	정	2014.	2.	21.	고시	제2014-	21호
개	정	2017.	2.	10.	고시	제2017-	15호
개	정	2019.	10.	1.	고시	제2019-	62호
개	정	2021.	1.	26.	고시	제2021-	7호
개	정	2021.	11.	29.	고시	제2021-	133호
개	정	2022.	11.	14.	고시	제2022-	101호
개	정	2025.	3.	18.	고시	제2025-	3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설탕,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팻릿(1,100×1,100mm) 또는 T-12형 팻릿(1,200×1,000mm)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에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pm 2.5\%$ 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pm 10\%$, 너비의 $\pm 10\text{mm}$,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pm 5\text{mm}$,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pm 2\text{mm}$ 로 한다.

③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너비·높이의 $\pm 3\text{mm}$ 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pm 5\%$ 로 한다.

②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pm 10\%$ 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

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등급규격)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표준규격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위계측·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2-28호, 2012. 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한 임산물은 출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산림청고시 제2007-124호(2007.11.1) 임산물 표준규격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2014-21호, 2014. 2.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5호, 2017. 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62호, 2019.10.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7호, 2021. 1.26.>

이 고시는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⑤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21-133호, 2021.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101호, 2022.11.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5-34호, 2025.3.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수 실 류	밤	1kg, 2kg, 4kg, 5kg, 8kg, 10kg, 20kg, 40kg
	건 대 추	1kg, 2kg, 3kg, 4kg, 5kg, 10kg, 15kg
	생 대 추	1kg, 2kg, 3kg, 4kg, 5kg, 10kg, 15kg
	뽕 은 감(생감)	2.5kg, 5kg, 10kg, 15kg
	홍 시	2.5kg, 5kg, 10kg, 15kg
	꽃 감	1kg, 1.5kg, 1.8kg, 2kg, 2.5kg, 3kg, 4kg, 5kg
	간 잣	140g, 200g, 300g, 500g, 1kg, 2kg, 5kg, 10kg
	호 두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은 행	5kg, 10kg, 20kg
	다 래	3kg, 5kg, 10kg
	복 분 자	3kg, 5kg
	산 딸 기	3kg, 5kg
	석 류	3kg, 5kg, 10kg
버 섯 류	건 표 고	500g, 600g, 800g, 1kg, 5kg
	생 표 고	1kg, 2kg, 4kg, 8kg, 12kg, 16kg, 20kg
	송 이	1kg, 2kg, 4kg, 8kg
	건꽃송이	50g, 100g, 200g, 500g
	생꽃송이	1kg, 3kg, 5kg
	건 목 이	50g, 100g, 200g, 500g
	생 목 이	1kg, 3kg, 5kg
산 나 물 류	건취나물	100g, 500g, 1kg, 2kg, 3kg, 4kg, 5kg, 10kg
	생취나물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건고사리	100g, 300g, 500g, 1kg, 2kg, 3kg, 4kg, 5kg
	생고사리	5kg, 10kg
	더 덕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생도라지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두 립	1kg, 2kg 3kg, 4kg, 5kg, 9kg, 10kg
	죽 순	1kg, 3kg, 5kg
	건고려영경귀(곤드레)	100g, 500g, 1kg, 2kg, 3kg, 4kg, 5kg, 10kg
	생고려영경귀(곤드레)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약 용 류	건오미자	100g, 200g, 300g, 500g, 600g, 1kg, 30kg
	생오미자	1kg, 3kg, 5kg, 10kg, 20kg
	건산수유	150g, 300g, 500g, 600g, 1kg, 3kg, 5kg
	건구기자	300g, 500g, 600g, 1kg, 2kg, 3kg, 15kg
기타	수 액	500ml, 1.5 ℓ , 4.5 ℓ , 9 ℓ , 18 ℓ

[별표 2]

임산물용 포장치수(제4조 관련)

1. 골판지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 mm×너비 mm)
1	1,300×350
2	1,010×360
3	1,025×533
4	825×275
5	554×246
6	545×335
7	530×350
8	520×280
9	510×360
10	500×366
11	450×305
12	440×310
13	430×320
14	423×254
15	420×325
16	415×260
17	400×300
18	391×317
19	366×260
20	350×350
21	350×250
22	330×256
23	300×175
24	220×165

2. 지대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550×300(절입 75mm)
2	650×380(절입 75mm)
3	650×420(절입 75mm)

3.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1,470×700
2	1,010×610
3	950×650
4	900×700
5	860×460
6	850×610
7	850×570
8	850×550
9	830×560
10	800×500
11	800×420
12	770×610
13	770×470
14	770×380
15	750×330
16	720×510
17	720×340
18	700×500
19	690×450
20	670×500
21	670×340
22	650×430
23	650×250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24	640×550
25	640×390
26	600×530
27	600×500
28	600×470
29	600×400
30	600×380
31	590×370
32	570×380
33	570×350
34	560×460
35	550×430
36	530×200
37	520×320
38	510×350
39	510×240
40	470×340
41	470×270
42	470×240
43	450×320
44	400×530
45	400×490
46	400×440
47	400×400
48	400×240
49	400×180
50	300×195
51	290×190
52	250×150
53	240×170
54	235×140
55	230×120
56	210×140

4. 플라스틱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높이mm)
1	1,100×1,100×200
2	1,010×360×240
3	720×470×330
4	660×440×245
5	560×510×330
6	560×510×230
7	550×366×320
8	550×336×245
9	550×366×230
10	550×366×180
11	550×366×155
12	366×275×155

5. 다단식 목재 상자 · 금속재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높이mm)
1	1,100×1,100×200

6.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높이mm)
1	535×340
2	450×310
3	440×310
4	410×340
5	348×250
6	360×260
7	355×258
8	350×264
9	350×240
10	349×249
11	365×250
12	302×232
13	280×220
14	265×203
15	257×190
16	250×195
17	250×190
18	190×140

[별표 3]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제7조 관련)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골판지 상자

표시단량	2kg 미만	2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골판지종류	양면골판지 1종	양면골판지 2종	이중양면골판지 1종	이중양면골판지 2종

※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KS T 1018(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34(외부 포장용 골판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P.E대(폴리에틸렌대)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P.E 두께	0.03mm 이상	0.05mm 이상	0.07mm 이상	0.10mm 이상

※ P.E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P.P대(직물제 포대)

섬도 (tex)	인장강도 (N)	봉합실 인장강도(N)	직조밀도 (올/5cm)	기 타
100±1	29이상	39이상	20±2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 이내로 접혀진 원사로 제작한다.

※ P·P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표시단량별 그물망의 무게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포장재무게	15g이상	25g이상	35g이상	45g이상

※ 원단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계이며, 메리야스상으로 직조한 것

5. 지대

거래단위	10kg 미만	10kg 이상	20kg 이상
평량(80g/m ²)	2~3겹	3겹	4겹 (3겹은 평량 90g/m ²)

※ 지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M 7501(크라프트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플라스틱 상자

- 플라스틱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81(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용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6.3의 압축강도는 KS T 1081 「표 2」 ‘압축 하중 중별’에서 4m를 적용한다.

7.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

-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45(포장용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8조 관련)

1. 표시사항

가. 의무 표시사항

1) "표준규격품" 문구

2) 품목

3) 산지

4) 품종

품종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할 수 있다.

5) 등급

6) 무게(수액의 경우 부피) 또는 개수

임산물의 실중량(실부피)을 표시한다.

※ 무게(수액의 경우 부피)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한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8)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가) 가열해서 먹어야 하는 버섯류·산나물류 : 생표고, 생꽃송이, 생목이,

생고사리, 두릅, 죽순, 생고려엉겅퀴(곤드레)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수실류·약초류 : 생대추, 홍시,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산양삼

- "세척 후 드세요."

다) 가열 또는 세척(생식) 품목 : 송이, 생취나물, 더덕, 생도라지, 생밤(깎밤)

- "세척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세척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송, 보관된 임산물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권장 표시사항

1)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2) 영양·주요 유효성분

가) 품목과 성분

품 목	영양·주요 유효성분
밤, 대추, 표고, 산양삼 등 임산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사포닌, 안토시아닌 등

나) 표시방법

-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 식품성분표"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2. 표시방법

가.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 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다.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내용량 (개수)	kg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 포장재치수 : 510×360×140mm, 포장재중량 : 1,200g±5% >

라. 글자 및 양식의 크기와 표시 위치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임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제9조 관련)

1. 수신훈

1) 밤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다만, 무게·크기 구분표상 해당 크기·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다만, 무게·크기 구분표상 해당 크기·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크기/무게	크기·무게 구분표상 “L” 이상인 것	크기·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 윤기가 양호한 것		
가벼운 결 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크기 · 무게를 기준으로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의 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
 - ② 이품종과, 기형과, 쌍동밤(쪽밤) 등의 결점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나) 크기·무게 구분

구 분	2L (특)	L (대)	M (중)	S (소)
1개의 생울직경 (mm)	38 이상	33 이상 38 미만	30 이상 33 미만	30 미만
1개의 무게 (g)	25 이상	16 이상 25 미만	13 이상 16 미만	13 미만

※ 등급판정은 구분항목의 무게 또는 직경 중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2) 건대추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다만, 크기·무게 구분표상 해당 크기·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다만, 크기·무게 구분표상 해당 크기·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크기/무게	크기·수량 구분표상 “L” 이상인 것		크기·수량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 윤기가 양호한 것			
수 분	30~40% 이하인 것			
가벼운 결 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크기 · 수량을 기준으로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수분함량”,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의 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
 - ② 미숙과, 열과, 변색과 등의 결점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 분	L	M	S
1개의 크기(횡경, mm)	22 이상	19 이상 22 미만	16 이상 19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3) 생대추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다만, 크기·무게 구분표상 해당 크기·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다만, 크기·무게 구분표상 해당 크기·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크기/무게	크기·무게 구분표상 "L" 이상인 것	크기·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하며 착색의 정도가 균일할 것		
당 도	복조 : 28°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왕대추(천황, 황실) : 19°Bx이상		
가벼운 결 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크기·무게를 기준을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당도”,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의 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
 - ② 미숙과, 열과, 변색과 등의 결점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무게 구분

구 분		4L	3L	2L	L	M	S
기준	품종						
1개의 크기 (횡경, mm)	복조	32이상	30 이상 32 미만	28 이상 30 미만	26 이상 28 미만	24 이상 26 미만	24 미만
	왕대추 (천황, 황실)	-	48 이상	43 이상 48 미만	38 이상 43 미만	33 이상 38 미만	28 이상 33 미만
1개의 무게 (g)	복조	21이상	18 이상 21 미만	15 이상 18 미만	12 이상 15 미만	10 이상 12 미만	10 미만

※ 등급판정은 구분항목의 무게 또는 직경 중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4) 짧은 감(생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다만, 무게 구분표상 해당 무게에서 1단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다만, 무게 구분표상 해당 무게에서 1단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하며 착색의 정도가 균일할 것		
당도	17°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 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무게를 기준을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당도”, “가벼운 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
 - ② 이종품, 미숙과, 열과, 탈색과 등 결점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3L	2L	L	M	S
기 준	품 종					
1개의 무게 (g)	등시(상주, 영동)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	200이상	170이상 200미만	140이상 170미만	140미만
	반시(청도)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	200이상	165이상 200미만	145이상 165미만	145미만
	갑주백목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380이상	300이상 380미만	250이상 3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00미만
	고동시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	200이상	170이상 200미만	150이상 170미만	150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5) 홍시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다만, 무게 구분표상 해당 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다만, 무게 구분표상 해당 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하며 착색의 정도가 균일할 것		
당 도	17°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무게를 기준을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당도”,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고르기”가 다른 것이나 “가벼운 결점” 등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
 - ② 이종품, 미숙과, 열과, 탈색과 등 결점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3L	2L	L	M	S
기 준	품 종					
1개의 무게 (g)	등시(상주, 영동)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	200이상	170이상 200미만	140이상 170미만	140미만
	반시(청도)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	200이상	165이상 200미만	145이상 165미만	145미만
	갑주백목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380이상	300이상 380미만	250이상 3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00미만
	고동시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	200이상	170이상 200미만	150이상 170미만	150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6) 콧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2% 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하며 모양이 균일하고 건조정도가 적당한 것		
수 분	건시 - 25~35% 반건시 - 45~55%	적용하지 않음	
당 도	건시 : 40°Bx 이상인 것 반건시 : 35°Bx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무게를 기준을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당도”,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고르기”가 다른 것이나 “가벼운 결점” 등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손상과, 기형과 등의 결점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3L	2L	L	M	S
기준	품 종					
건시 1개의 무게 (g)	동시(상주, 영동), 고통시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60이상	55이상 60미만	45이상 55미만	40이상 45미만	40미만
반건시 1개의 무게 (g)	반시(청도)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80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7) 깻짖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무게	무게 구분표상에서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모양	충실정도,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가 뛰어난 것으로 내피가 붙은 낱알이 없는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수분	건조정도가 적당한 것		
가벼운 결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맛	고유의 색깔 고소한 맛과 향미가 뛰어나며, 쓴맛이 없는 것		
파쇄립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정 의>

(1) 가벼운 결점

- ① 모양이 좋지 않거나 경미하게 금간 것
- ② 병충해의 피해 및 부패 또는 낱알이 변질된 것이 경미한 것
-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 (g)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5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8) 호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하고 모양이 균일하며 건조 상태가 적당한 것		
가벼운 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무게를 기준을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당도”,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고르기”가 다른 것이나 “가벼운 결점”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
 - ② 형상이 불량하거나 외피의 변색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등의 결점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무게 (g)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9) 은행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모양	난알의 모양이 균일하며 충실정도가 뛰어난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깔을 가진 것으로 윤기가 있는 것		
가벼운 결점	1%이하인 것	3%이하인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에서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정 의>

(1) 가벼운 결점

- ① 형상이 불량과, 외피 변색과 등 외관이 떨어지는 것
- ②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 (g)	220 이상	150 이상 220 미만	15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10) 다래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L” 이상인 것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한 것		
당 도	15°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무게를 기준을 정하되 “고르기”, “모양/색택”, “당도”, “가벼운 결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고르기” 등이 다른 것이나 “가벼운 결점” 등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
 - ② 외관 등 형상이 불량하고 상처가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는 등의 결점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기준	구 분	2L (특)	L (대)	M (중)	S (소)
	품종				
1개의 무게 (g)	새한, 대성, 칠보, 참그린, 광산, 청산, 그린볼, 청연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9 이상 12 미만	9 미만
	오텀센스, 신그린, 그린하트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21 이상	18 이상 21 미만	15 이상 18 미만	15 미만
	대보 및 이와 무게가 유사한 품종	40 이상	34 이상 40 미만	30 이상 34 미만	3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11) 복분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L” 이상인 것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 고유의 모양이 양호한 것 - 북미산 열매인 경우 검은색 선택, 열매 내부 백분이 또렷한 것 - 토종인 경우 검붉은색으로 선택이 또렷한 것	- 고유의 모양이 양호한 것 - 북미산 열매인 경우 검은색 선택, 열매 내부 백분이 양호한 것 - 토종인 경우 검붉은색으로 선택이 양호한 것	
당 도	- 북미산 : 11°Bx 이상인 것 - 토종 : 9°Bx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 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무게를 기준을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당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고르기’, ‘가벼운 결점’에서 무게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병충해 피해 및 외관 등의 형태가 불량하거나 상처가 있고, 이 물질이 붙어 있는 등의 결점 정도가 포장단위 전량에서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나) 무게 구분

구 분	종 구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무게 (g)	북미산 복분자딸기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5 미만
	토종 복분자딸기	1.6 이상	1.2 이상 1.6 미만	1.2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12) 산딸기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나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나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크기/무게	크기·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한 것		
당 도	8.2°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크기 · 무게를 기준으로 정하되 “혼입률”, “모양/색택”, “당도”,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고르기” 등이 다른 것이나 “가벼운 결점” 품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 ② 외관 등의 형상이 불량하고 상처가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는 등의 결점이 있으나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무게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크기 (mm)	종경	13 이상	11 이상 13 미만	11 미만
	횡경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5 미만
1개의 무게 (g)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2.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13) 석류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L” 이상인 것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표면이 매끈하고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한 것			
중결점	없는 것			5% 이하인 것
가벼운 결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 (2) 중 결 점 : 부패 또는 변질, 병해충 피해가 있는 것, 형상불량이 심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중대한 것
- (3) 가벼운 결점
 - ①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2L (특)	L (대)	M (중)	S (소)
1개의 무게 (g)	400 이상	300 이상 4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20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2. 버섯류

1) 건표고

가) 등급 규격

(1) 동고·향고·향신

항목/등급	특	상	등외품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의 규격이 정확히 준수되고 타등급의 혼입률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의 규격이 정확히 준수되고 타등급의 혼입률이 10% 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갓의 두께	(동고·향고) 두께 구분표상 "상" 이상이 80% 이상인 것 (향신) 두께 구분표상 "중" 이상이 80% 이상인 것	(동고·향고) 두께 구분표상 "중" 이상이 60% 이상인 것 (향신) 두께 구분표상 "하" 이상이 60% 이상인 것	
갓의 모양	(동고) 균일한 모양이 유지된 원형, 타원형인 것이 80% 이상인 것 (향고) 균일한 모양이 유지된 원형, 타원형인 것이 60% 이상인 것 (향신) 균일한 모양이 유지된 원형, 타원형인 것이 50% 이상인 것 (공통) 갓 끝둘레가 고르게 오므라든 것		
갓의 퍼짐	(동고·향고) 갓이 30% 이하로 퍼진 버섯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 (향신) 갓이 60%이하로 퍼진 버섯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	(동고·향고) 갓이 50% 이하로 퍼진 버섯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 (향신) 갓이 80%이하로 퍼진 버섯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	
갓의 선택	버섯 고유의 색깔이 건조 후에도 일정하게 고르며 갓의 내면이 밝은 노란색인 것	버섯 고유의 색깔이 건조 후에도 일정하게 고르며 갓의 내면이 노란색, 백색인 것	
수 분	수분함유량이 13% 이하인 것		
이 품	없는 것		
피해품	없는 것		

<정 의>

- (1) 등급규격 : 갓의 형태(모양, 퍼짐, 두께, 색깔) 및 크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고르기, 건조, 이품, 피해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 등급
- (2) 혼입률(%) : 같은 등급으로 선별된 버섯이 포장된 상품 1개에서 타등급이 혼입된 비율
- (3) 갓의 퍼짐 : 갓이 완전히 퍼진 상태를 100%, 자루에 완전 오무러진 상태를 0%로 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 (4) 수 분 : 50~60℃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

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5) 이 품 : 해당종류 이외의 타물질

(6) 피해품

- ① 병충해과 : 곰팡이, 응애, 버섯파리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 ② 파쇄품 : 버섯의 외형이 깨어지는(부서지는) 손상을 입은 것
- ③ 기형품 : 버섯의 외형이 심하게 변형된 것
- ④ 변질, 변색품 : 품질이 변질 되었거나 색깔이 변한 것
- ⑤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나) 두께 구분

구 분	상	중	하
1개의 갓 두께 (cm)	1.0 이상	0.5 이상 1.0 미만	0.5 미만

※ 갓의 두께는 갓의 윗면부터 내면 방향으로 오므라든 끝 부위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다) 크기 구분

구 분		2L (특)	L (대)	M (중)	S (소)
기 준	품 목				
1개의 갓 직경 (cm)	동고 및 향고	6 이상	5 이상 6 미만	3 이상 5 미만	3 미만
	향신	7 이상	5 이상 7 미만	4 이상 5 미만	4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지름을 말한다.

라)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마) 표시 사항 : 취급하고자 하는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의 재배방법을 「원목」, 「툽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별표 4>를 참조한다.

※ 표고버섯의 재배방법에 따라 아래의 도안(예시)을 병기표시 할 수 있다.
<표고버섯의 “재배방법”에 따른 표시(예시)>

	
원 목	툽밥배지

2) 생표고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등외품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의 규격이 정확히 준수되고 타등급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의 규격이 정확히 준수되고 타등급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갓의 두께	두께 구분표상 "상" 이상이 80% 이상인 것	두께 구분표상 "상" 이상이 60% 이상인 것	
갓의 모양	균일한 모양이 유지된 원형, 타 원형인 것이 80% 이상인 것	균일한 모양이 유지된 원형, 타 원형인 것이 60% 이상인 것	
갓의 퍼짐	갓이 5% 이하로 퍼진 버섯을 채취한 것	갓이 10% 이하로 퍼진 버섯을 채취한 것	
갓의 색택	신선버섯 고유의 색깔이 균일하고 갈변현상이 3% 이하인 것	신선버섯 고유의 색깔이 균일하나 갈변현상이 10% 이하인 것	
이 품	없는 것		
피해품	없는 것		

<정 의>

(1) 등급규격 판정 : 두께 및 크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혼입률", "모양",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신선버섯을 채취한 후 24시간 이하인 것에 등급판정을 기준으로 한다.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 "고르기" 등이 다른 것이나 "가벼운 결점"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3) 이품 : 해당 상품 이외의 타물질

(4) 피해품

- ① 병충해과 : 곰팡이, 응애, 버섯파리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 ② 파 쇠 품 : 버섯의 외형이 깨어지는(긁히는) 손상을 입은 것
- ③ 기 형 품 : 버섯의 외형이 심하게 변형된 것
- ④ 변질, 변색품 : 품질이 변질 되었거나 색깔이 변한 것
- ⑤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나) 두께 구분

구 분	상	중	하
1개의 갓 두께(cm)	1.5 이상	1 이상 1.5 미만	1 미만

※ 갓의 두께는 갓의 윗면 부터 내면 방향으로 오르라든 끝 부위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다) 크기 구분

구 분	2L (특)	L (대)	M (중)	S (소)
1개의 갓 직경 (cm)	6.5 이상	5.5 이상 6.5 미만	3.5 이상 5.5 미만	3.5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지름을 말한다.

라)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마) 표시 사항 취급하고자 하는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의 재배방법을 「원목」, 「톱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별표 4>를 참조한다.

※ 표고버섯의 재배방법에 따라 아래의 도안(예시)를 병기표시 할 수 있다.

<표고버섯의 “재배방법”표시(예시)>

	
원 목	톱밥배지

3) 송이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1등급 품	2등급 품	3등급 품	등외품
길이	크기 구분표상 “L”인 것	크기 구분표상 “M”인 것	크기 구분표상 “S”인 것	“1등급 품”, “2등급 품”, “3등급 품” 등급에 미달하는 것 (피해품 포함)
갓의 모양	갓이 절대로 퍼지지 않은 정상품(자루 굽기가 불균형하게 가는 것은 제외)	갓이 1/3이하로 퍼진 것 및 1등급에서 제외된 자루 굽기가 불균형하게 가는 것	개산품(갓이 1/3이상 퍼진 것)	
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한 것			

<정 의>

(1) 피해품

- ① 병충해과 : 곰팡이, 응애, 버섯파리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 ② 파 쇠 품 : 버섯의 외형이 깨어지는(굽히는) 손상을 입은 것
- ③ 기 형 품 : 버섯의 외형이 심하게 변형된 것
- ④ 변질, 변색품 : 품질이 변질 되었거나 색깔이 변한 것
- ⑤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길이 (cm)	8 이상	6 이상 8 미만	6 미만

※ 길이는 송이 아래 끝부터 갓 윗면까지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4) 건꽃송이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갓의 크기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특”, “상”등급에 미달하는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한 것		
수분	13%이하		
이품	없는 것		
피해품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 (1) 갓의 크기 : 재배방법(병재배, 봉지재배, 단목재배)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형질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단, 재배방법에 따른 형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단경과 장경의 합의 평균값 적용)
- (2) 수 분 : 50~60℃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3) 이 품 : 해당 종류 이외의 것
- (4) 피해품
 - ① 파 쇠 품 : 버섯의 손상이 많이 되어 가루화율 5% 이상,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② 변질, 변색품 : 버섯이 물러지고 색깔이 변한 것
 - ③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갓 직경 (cm)	7 이상	4 이상 7 미만	4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대와 최소 합의 평균지름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5) 생꽃송이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갓의 크기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한 것		
신선도	신선하고 탄력이 있고, 고유의 향기를 유지할 것		
이품	없는 것		
피해품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 (1) 갓의 크기 : 재배방법(병재배, 봉지재배, 단목재배)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형질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단, 재배방법에 따른 형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단경과 장경의 합의 평균값 적용)
- (2) 이 품 : 해당 종류 이외의 것
- (3) 피해품
 - ① 파쇄품 : 버섯의 손상이 많이 되어 가루화율 5% 이상,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② 변질, 변색품 : 버섯이 물러지고 색깔이 변한 것
 - ③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갓 직경 (cm)	15 이상	7 이상 15 미만	7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대와 최소 합의 평균지름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6) 건 목 이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갓의 크기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특”, “상”등급에 미달하는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한 것		
수분	13%이하		
신선도	신선하고 탄력이 있고, 고유의 향기를 유지할 것		
이품	없는 것		
피해품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 (1) 갓의 크기 : 재배방법(병재배, 봉지재배, 단목재배)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형질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단, 재배방법에 따른 형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단경과 장경의 합의 평균값 적용)
- (2) 수 분 : 50~60℃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3) 이 품 : 해당 종류 이외의 것
- (4) 피해품
 - ① 파 쇄 품 : 버섯의 손상이 많이 되어 가루화율 5% 이상,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② 변질, 변색품 : 버섯이 물러지고 색깔이 변한 것
 - ③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갓 직경(cm)	7 이상	3 이상 7 미만	3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대와 최소 합의 평균지름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7) 생 목 이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갓의 크기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선택	품종 고유의 모양, 선택이 양호한 것		
신선도	신선하고 탄력이 있고, 고유의 향기를 유지할 것		
이품	없는 것		
피해품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 (1) 갓의 크기 : 재배방법(병재배, 봉지재배, 단목재배)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형질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단, 재배방법에 따른 형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단경과 장경의 합의 평균값 적용)
- (2) 이 품 : 해당 종류 이외의 것
- (3) 피해품
 - ① 파 쇄 품 : 버섯의 손상이 많이 되어 가루화율 5% 이상,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② 변질, 변색품 : 버섯이 물러지고 색깔이 변한 것
 - ③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갓 직경(cm)	8 이상	5 이상 8 미만	5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대와 최소 합의 평균지름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3. 산나물류

1) 건취나물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경화되지 아니한 것을 데쳐 말린 상태가 양호한 것	경화되지 아니한 것을 데쳐 말린 상태가 양호한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색택/향기	품종 고유의 녹색을 띤 흑갈색으로 향기가 있는 것		
수분	12%이하인 것		
가벼운 결 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정 의>

- (1) 수 분 : 80~85℃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2) 가벼운 결점
 - ① 반점 및 변색, 황화된 것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
 - ② 부서진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2) 생취나물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잎의 생김새 및 크기가 고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	잎이 밝은 연녹색인 것으로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노화된 것이 없는 것	잎이 밝은 연녹색인 것으로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노화된 잎의 혼입이 10%이하인 것인 것	
가벼운 결 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 정 의 >

(1) 가벼운 결점

- ① 반점, 벌레 먹은 흔적 등의 병충해 피해 또는 경화되었거나 변색, 황화된 것
- ② 오염된 것 등 기타 결점의 전도가 경미한 것.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3) 건고사리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줄기의 길이 및 굵기가 고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	앞끝이 벌어진 것이 5% 이하인 것을 떼쳐서 말리고, 줄기하단의 목질부를 제거한 것	앞끝이 벌어진 것이 10% 이하인 것을 떼쳐서 말리고, 줄기하단의 목질부를 제거한 것	
색택	품종고유의 색깔이 균일한 것		
수분	12%이하인 것		
가벼운 결 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정 의>

- (1) 수 분 : 80~85℃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2) 가벼운 결점 : 줄기가 경화되었거나 반점 및 변색 또는 심하게 부서진 것.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4) 생고사리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줄기의 길이 및 굵기가 고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	잎끝이 벌어지거나 줄기 부분이 세 개로 벌어진 것이 5% 이하이며, 줄기의 두께가 얇고 길이가 10cm 정도일 것	잎끝이 벌어지거나 줄기 부분이 세 개로 벌어진 것이 10% 이하이며, 줄기의 두께가 얇고 길이가 10cm 정도일 것	
색택	품종고유의 색깔(고동색)이 균일한 것		
가벼운 결 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 (1) 가벼운 결점 : 줄기가 경화되었거나 반점 및 변색이 있는 것.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5) 더덕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	품종고유의 색깔로 향기가 뛰어나며 표면의 주름골이 깊지 않고 뿌리의 줄기가 2개 이상인 것이 없고 곧은 것	품종고유의 색깔로 향기가 뛰어나며 표면의 주름골이 깊지 않고 뿌리의 줄기가 2개 이상인 것이 10%이하인 것인 것	
가벼운 결 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 (1) 가벼운 결점 : 줄기가 경화되었거나 반점 및 변색 또는 심하게 부서진 것.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뿌리 길이 (cm)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1개의 뿌리 굵기 (cm)	2.5 이상	1.5 이상 2.5 미만	1.5 미만

※ 길이 : 요두에서 부터 식용으로 가능한 부위까지 길이를 말한다.

굵기 : 원뿌리의 가장 굵은 부위 직경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6) 생도라지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의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인 것	크기 구분표상의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 이하인 것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	뿌리가 곧고 굽으며 잔뿌리가 거의 없고 매끄러우며 크기가 “L” 이상인 것	뿌리가 곧고 굽으며 잔뿌리가 거의 없고 매끄러우며 크기가 “M” 이상인 것	
가벼운 결 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 정 의 >

- (1) 가벼운 결점 : 병충해근, 상해근, 형상불량근 중 그 피해가 경미한 것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뿌리 길이 (cm)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20 미만
1개의 뿌리 굵기 (cm)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5 미만

※ 길이 : 요두에서 부터 식용으로 가능한 부위까지 길이를 말한다.

굵기 : 원뿌리의 가장 굽은 부위 직경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7) 두릅

가) 등급 규격

(1) 삼수두릅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크 기	크기 구분표상 "L"인 것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을 갖춘 것으로서 육질이 연하고 싱싱한 것		
개엽의 정도	순(筍) 끝부분의 잎이 거의 개엽되지 않은 것	순(筍) 끝부분의 잎이 약간 개엽된 것	
가벼운 결 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 잎두릅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인 것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크 기	크기 구분표상 “L”인 것	크기 구분표상 “M”이상인 것	
모양/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색택을 갖춘 것으로서 육질이 연하고 싱싱한 것		
개엽의 정도	순(筍) 끝부분의 잎이 거의 개엽되지 않은 것	순(筍) 끝부분의 잎이 약간 개엽된 것	
가벼운 결 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정 의>

- (1) 등급규격 판정 : 크기 구분표상 굵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모양/색택”, “새순의 길이”, “가벼운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2) 혼입률(%) : 포장단위 전량에서“고르기”가 다른 것이나“가벼운 결점”등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3) 가벼운 결점
 - ① 병충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 ② 굵거나 기타 결점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
- (4) 개엽의 정도 : 두릅순(筍) 끝부분의 잎이 벌어진 정도를 말한다.

나) 크기 구분

구 분		L	M	S
삼수두릅	새순 굵기 (cm)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새순 길이 (cm)	10~15	10~15	10 미만
잎두릅	새순 굵기 (cm)	1.8 이상	1.4 이상 1.8 미만	1.4 미만
	새순 길이 (cm)	14~20	14~20	14 미만

※ 새순 굵기는 목질부에 부착된 새순의 밑동 부위 직경을 말함.

※ 새순 길이는 목질부를 제외한 식용 가능한 순(筍)과 잎의 총길이를 말함.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8) 죽순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길이	크기 구분표상 “M” 이하인 것	적용하지 않음	
직경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모양/선택	품종 고유의 모양, 선택이 양호한 것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가벼운 결 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정 의>

- (1) 중 결 점 : 부패 또는 변질, 병해충 피해가 있는 것, 형상불량이 심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중대한 것
- (2) 가벼운 결점
 -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길이(cm)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미만	25 이상 30 미만
1개의 직경(cm)	9 이상	7 이상 9 미만	5 이상 7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9) 건고려엉정귀(곤드레)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경화되지 아니한 것을 데쳐 말린 상태가 양호한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색택/향기	품종 고유의 녹색을 띤 흑갈색으로 향기가 있는 것		
수분	12%이하		
가벼운 결 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정 의>

- (1) 수 분 : 80~85℃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2) 가벼운 결점
 - ① 반점 및 변색, 황화된 것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
 - ② 부서진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10) 생고려영콩퀴(곤드레)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잎의 생김새 및 크기가 고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	잎이 밝은 연녹색인 것으로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노화된 것이 없는 것	잎이 밝은 연녹색인 것으로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노화된 잎의 혼입이 10%이하인 것인 것	
가벼운 결 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가벼운 결점

- ① 반점, 벌레 먹은 흔적 등의 병충해 피해 또는 경화되었거나 변색, 황화된 것
- ② 오염된 것 등 기타 결점의 전도가 경미한 것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4. 약용류

1) 전오미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으로 착색된 정도가 양호한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수분	25%이하인 것		
가벼운 결 점	없는 것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가벼운 결점

-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 (g)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2) 생오미자

가) 등급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이 양호한 것		
신선도	품종 고유의 맛과 향이 양호한 것		
가벼운 결 점	없는 것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가벼운 결점

-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 (g)	22 이상	18 이상 22 미만	18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3) 건산수유

가) 등급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가 있으며, 육질이 많은 것		
무게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수분	18%이하		
가벼운 결 점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가벼운 결점

-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크기 (mm)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12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4) 건구기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가 있으며 건조상태가 적당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이 양호한 것	
무게	크기·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수분	15%이하		
가벼운 결 점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가벼운 결점

-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무게 구분

구 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크기 (mm)	14 이상	12 이상 14 미만	12 미만
100립의 무게 (g)	18 이상	10 이상 18 미만	1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5. 약초류

1) 산양삼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무농약)		합격 (무농약 또는 적합)	
재배유형	종자 파종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이식)		
경흔적 개수	경흔적 7개 이상	경흔적 5개 이상	경흔적 3개 이상	경흔적 2개 이상
적변 유무	적변 없음		적변 없음 또는 적변 혼재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여부는 품질검사 합격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재배유형, 경흔적 개수, 적변 유무 항목은 생산자 및 판매자가 직접 판단해야 함

※ 경흔적은 산양삼 뇌두의 명확한 줄기(莖) 흔적을 말함

※ 뿌리썩김 등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 '3등급'에 해당함

- 산양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6. 수목부산물류

1) 수액

- 용기 : 용기의 거래단위를 500ml, 1.5ℓ, 4.5ℓ, 9ℓ, 18ℓ로 한다.

※ 수액은 수종 및 성분함량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므로 거래 단위를 규격으로 함